

# Q&A

## 석공시관련 건교부 질의응답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Q**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전문건설업종 건설공사 예시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외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와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공사는)”, 목재 등을 사용 한 커니아공사, 목공사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석공사, 조적공사, 철물공사업으로 행하여진 공사를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즉 상기 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이거나 그 밖의 실내공사(마감, 방수, 도장, 창호)를 실내건축공사업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 해석인지 확인을 원하며, 만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타업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실내건축업체가 다른 전문공사면허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업체에게 법으로 정한 이외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때 일반건설업체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자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자에게 일부범위를 벗어나는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일반건설업체에게 대한 제재는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나목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6월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6~21%의 과징금 부과 시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Q**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저는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으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호국선열의 석비(비석, 상석, 묘도플래서등)의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비공사의 경우 석공사(전문공사)이외에는 다른 면허로 뷔기가 힘들어, 지금까지 석공사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도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의 경우 대부분 하천의 호안불리이나 석축이나, 건물의 외부 석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석비건립의 경우는 석물을 제작하는 석조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급자는 벌주처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용참여자라는 명목으로, 사용참여자에게 석비의 가공 및 각자로 맡기고, 도급자는 설치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공사 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석비건립공사는 논증‘자체공사임’)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비를 가공하고 각자하는 부분을 정식 하도급자로서 벌주처에서 관리하고, 도급자는 설치만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공사의 경우도 정식하도급을 인정하여 벌주처에서 하도급자를 관리할수 있는지와 2. 비건립을 석공사로 뮤지 않고 일반(토목)공사으로 제한하여 벌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A** 1. 전문업체가 원청이라면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및 제조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가 아닙니다. 2. 일반으로 벌주여부는 법8조, 16조에 따라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한 것이나 여부에 따라 벌주자가 판단할 시황입니다.

## ‘석재인’ 신문

### 창간을 축하합니다!

## 동아대리석(주)

대표 오재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1 터워팰리스 6동

☎ (02) 569-8481

## (주)장동석재

대표 노군자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979-51

☎ (063) 858-8474~5, (063) 858-8473

## (유)형진석재산업

대표 이인철

전북 익산시 함평읍 석매리 52-19

☎ (063) 861-0136, (063) 862-0136

## 조양석재(주)

대표 김성태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15-1번지

☎ (051) 505-7852~3, (051) 972-1999

## (주)STONE KOREA

대표 양진호

경기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390

☎ (031) 535-5273, (031) 536-4100

## 동남석재

대표 이정구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동 780-2

☎ (02) 381-0739, (02) 381-0728

## 청암석재산업

대표 허태우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5

☎ (055) 943-2653, (055) 944-3609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대표 김성수

경기 포천군 영종면 성동5리 822-2

☎ (031) 531-8736, (031) 531-5549

## 삼지석재공업(주)

대표 김정달

세종시 강북구 수유1동 472-474

☎ (02) 881-0027, (031) 543-1541~3

## 모동기업사

대표 강종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95-1

☎ (055) 944-5382, (055) 942-5382

# 샌드크랙서 도입 모래폭풍 잠재울까

## 제주건설업 ‘모래폭풍’에 좌초위기

해결기미를 보이던 제주도내 모래수급이 다시 인계 속에 빠졌다. 일단 도내 모래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도군의 양인설 군수가 환경·시민단체들의 항의방문에 “신안군과 해남군이 골재수급조절은 생각않고 하가를 증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기가간과 양을 줄여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진도군의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도시립연대회의는 최근 공약사항 등을 이유로 하가보조를 감도높게 요구하고 있어 모래수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진도군수의 공약사항이 재정수입확대에 기여하는 반면 해양오염과 생태계파괴 등 부분별하게 채워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또 진도시립연대회의는 “3년전 진도군과 신안군이 골재체취업자와 공동의 여수수산대 환경오염조사 등 용역결과가 나오는 2003년 6월까지 하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골재체취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마저 예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모래체취와 관련 어민, 암자, 기관간 갈등이 여러 차례 불거져왔다.

지난 6월에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어업에 방해된다며 선박을 동원한 모

### 제주도내 모래소요율

래체취 저지에 나섰는가 하면 목포와 태안군 일대 시민환경단체들도 남다른 모래지기 폭발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하는 등 모래생산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 모래반입률은 전남 진도군 암반 5개 광구에서 제작되는 일평균 110~120만㎥에 이른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도내 소요 예상률량은 45만㎥가량이다. 진도군이 지난 8월 결정과 최근 진도군수의 입장표명을 그대로 할 경우 올해도 남은 소요량은 별 무리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쪽으로부터 비단모래 45만 톤을 비롯 규사 20만톤 톤을 물들여오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모래

파동을 대변하듯 지난해 대비 16.6% 정도 가격이 올라 1루배(1.6배)당 진도 산이 1만4천원, 인천산이 1만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이다. 도내 모래반입 지역 중 하나인 신안군 등은 이미 바다모래체취를 불허하고 체취장 경정을 한 진도군 역시 생신량을 5백만 톤 배에서 2백만 톤으로 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에 벌써 친밀감이 예고된다. 지난 7월경 상반기 건설 공사도급액이 352건에 2713억원

으로 지난해 대비 61%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9월 들어서는 건설경기 호황을 선도한 주택부분 수주가 급급세로 돌아섰다. 건설산업연구원은 4/4분기 수주율량이 1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과 파인공급이란 축면도 있지만 모래주산지의 체취량 감소와 제한은 공사지연과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비단모래 공급선을 전라도 지역에서 인천 등지로 바꾼다고 해도 물류비 상승은 물론 모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에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지역에

서 필요한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진도군측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최근 골재체취기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제주지역의 상황이 더욱 어렵다”며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 자주무역형 개발 등 민간 건설공사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연간 170만㎥ 정도의 모래수급에 협조해달라고 밝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 당장 다른 지역의 모래를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들고 있다.

도내 일부 건설업체들과 언론 등에서는 ‘중국도’의 도입을 대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단 건축용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미콘 배합 등 건축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입도(굵기)가 큰 중국의 중·상류층 강기의 모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하류지대의 세사(細沙)가 주를 이루 국내산 절에 못미친다는 평이다.

게다가 운반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이다. 또한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내에 들어온 중국산 모래는 주로 골프장 벙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조선대 내분 석공사 시비로 법정간다

### 교수협 “부정의혹” 제시

### 학교측 “명예훼손” 대응

임명일 총장의 학교 경영방식을 둘러싼 조선대 교수들간 반목이 법정에 펼쳐졌다.

조선대 교수협의회(의장·학과교수회장자 등)는 “임명일 총장은 학교 경영방식을 둘러싼 교수들간 5개 부서에 대해서는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명일 총장은 “임명일 총장은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를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양총장과 보직 교수들은 “별다른 근거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수협 관계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교수협의회 주장 =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석재공사(공사비 17억원)를 하면서 시방서에 적힌 국내산 물 대신 전반 절반 절에 불과한 중국산 물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또 “2000년 3월 캠퍼스에 계약서에는 원석나무를 심기로 돼 있으나 실제 절반에도 못미치는 산벚나무를 심어 배임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속병원에서 받아야 할 일상교수급료 15억원을 부속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비로 쓰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총장이 미국 휴스턴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도 1989년 복직을 위해 행정학 박사로 표시했다”며 행정학박사 학위 명칭 사용금지 거치분 신청도 냈다.

박의장은 “양총장 취임 이후 각종 부정의혹이 제기돼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무시해 고소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대응=학교측은 이와 관련 긴급처장단 회의를 갖고 “교수협의회가 학교 명예를 훼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종 공사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고 양총장 학위 명칭도 실질적으로 행정학을 전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수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현 총장 훈련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나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정면 돌파한다”고 말했다.

## 미국건설호황 석재업계 “파란불” 시장에서 계속>

지난해 중국의 미감석재는 미국시장에 깊숙이 침투했다. 특히 웨스트 코스트는 중국의 확장세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커지고 있다. 디소 실현적이기는 하지만 이태리에도 이미 적용한 상태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석재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는 이미 자국산 석재제품과 원자재들이 호황을 누린 바 있고 현재도 일정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회암, 스페인의 대리석, 화강암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를 국가는 확립한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석재의 특성과 모양 등에 따라 특별한 선택을 하는 이상적인 미국 소비자들을 고적으로 삼고 있다. 이태리와 포르투갈의 대리석과 노르웨이의 화강암과 대리석도 마찬가지이다.

제석산업은 몇몇 국가에서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과 자중해 남해안지역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해상교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시리아와 이집트가 현재 염속성을 가진 나리로 꼽힌다. 이 지역은 장지적으로 분쟁 가능성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기자지역과의 교역은 마비돼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석재는 개발이 무척 힘든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은 곳과 단순 비교할 결과일 뿐이다. 이곳 역시 부의 축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은 경제활동이 주체이다.

성장주체를 보